재외동포기본법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4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 안민석·강민정·김승원

김회재 • 류호정 • 박성준

양경숙 · 양정숙 · 윤재갑

이상민 · 이상헌 · 전혜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현재는 「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」(대통령훈령)에서 정부의 재외동 포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고, 외교부에서 이를 추진하여 왔음.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, 이들 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사항을 법률 로서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음.

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정 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 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,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 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 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 조).
- 나.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·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 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라.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0조).
- 마.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, 추진, 점검 및 평가 등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도록 함(안 제11조).
- 바.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.

재외동포기본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"재외동포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가.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
 - 나.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·생활하는 사람
 - 2. "재외동포정책"이란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, 한인(韓人)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지원 및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, 글로벌 한인 네트워 크 구축, 대한민국 방문 지원 및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권익 신장 등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.
- 제3조(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)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 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

- 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편의를 제공하고,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⑤ 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 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국가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 사업을 실시하여 야한다.
- 제4조(국가의 책무)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글교육, 전통문화행사 등 민족교육, 문화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별 현지 특성과 세대 및 연령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

행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제5조(국제사회와의 조화) 국가는 국제법 및 조약을 준수하고 재외동 포 거주국의 정책 및 관할권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재외동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7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 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재외동포정책의 정책방향과 추진목표
 - 2.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조정
 - 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 - 4.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-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제8조(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) ①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

-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교부장관은 이를 종합·조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 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- ③ 재외공관(「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」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 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 동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외동포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, 그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업무 협조) 외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재외동포정책위원회)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

위한 주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- 1. 기본계획의 수립,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2.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재외동포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4.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·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
- 2.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 리가 위촉하는 사람
-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,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 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재외공관의 역할)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시

행을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발굴, 추진 및 평가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재외동포의 의견 청취) ① 국가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재외동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재외동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의 지정 등)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동 포정책 추진기관(이하 "추진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
 - 2. 재외동포정책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
 - 3. 재외동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 - 4.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, 상담,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
 - 5. 재외동포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 - 6. 재외동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
 - 7.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 - ③ 외교부장관은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추진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

한다.

제14조(국회 보고)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